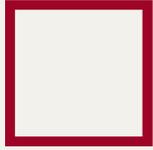




제 15 장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제15장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1. 의의 및 필요성

가. 의 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들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일반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일정한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필요성¹⁷

1) 전문화의 요구

첫째, 환경의 변화는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한다. 변화된 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변호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업무 자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전자의 측면에서는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외국변호사의 한국진출과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로 인하여 업무가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조인구 증가와 함께 높아진 경쟁도 변화된 환경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측면, 즉 변호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는 업무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현재도 여전히 송무가 변호사 업무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상담과 문서작성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기업 법무 분야의 역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예방에 관한 업무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전문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일반 대중과 변호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기초하여 구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은 다른 분야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보다 양질의 급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17 신은주,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인증방법」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2006., 1~5면.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높아진 욕구에 합당한 수준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며, 서비스의 질 향상은 변호사 능력의 향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전문화를 강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 대중의 변화된 의식과 이에 부응하여 전문화되고 향상된 능력을 가진 변호사는 그만큼 의뢰인에게 선호되기 때문에 전문화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셋째, 전문화가 필요한 이유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변호사 활동의 기초가 되는 법적 지식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법적 지식의 양적·질적인 변화에 따른 전문성의 요구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법령과 그에 따른 복잡한 법제도와 규정의 세밀함 및 더욱 더 풍부해진 판례와 법률문헌의 양적 증가 등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 하여금 법의 전 영역을 다루는 것을 점점 더 곤란하게 한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기업합병과 금융관련법 제도, 보험의 발달로 인한 복잡한 보험법 제도, 전문가를 둘러싼 책임문제, 제조물과 관련된 피해 등 생활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이에 수반된 법적 통제기술도 복잡해지고, 법령의 형태로 등장한 새로운 법적 통제수단의 증가는 법적 지식의 질을 변화시켜 그 습득이 더 어렵고, 습득하는데도 긴 시간을 요구한다. 더구나 지적재산권 분야와 같이 법적 지식만 가지고 변호사로서 충분한 활동이 곤란한 법 영역도 등장하고, 변호사의 독점적인 활동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분야 등의 증가는 보다 전문화되는 것이 경쟁력 있게 된다.

넷째, 변호사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은 전문직에 내재하는 고유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법 또는 의료와 같이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봉사하려는 것이 전문직의 제일의 존재근거라고 한다면, 일반 대중과 전문인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지위에 스스로 부과하고 있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그와 같은 전문지식의 고도화는 전문화를 수반하게 된다.

다섯째, 전문화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정된 시장에서 변호사 수의 증가는 자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의뢰인의 눈치를 보며 서비스의 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내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쟁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쟁을 고도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 상호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직역, 기업 내의 법무팀 혹은 다른 전문직 등과의 경쟁에서도 동일하다. 변호사들이 그들 안팎에서 해야 하는 경쟁자를 의식하면 할수록 자신의 존재확보를 위해서 전문화의 길을 걷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변호사의 업무영역의 확장과 경쟁력은 특정한 보호 속에서 키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쟁 속에서 필사의 생존전략으로 고품질화를 이루고 전문화된 영역에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낮은 비용화를 피해 온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적절한 안내자의 기능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전문화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으면 그만큼 적합한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일반 시민이 자신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찾는 데 길잡이가 되어준다. 예컨대 조세분야 전문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조세에 관한 법률문제가 있는 자는 조세 전문 표시가 되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적합한 변호사에 대한 안내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시민이 적절한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유통되어야 하고,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시민이 적절한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경우에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의 또 하나는 바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 때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문표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된 표시제도 내지는 전문화 인정제도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허위광고나 부정확한 광고내용에 의해 변호사의 전문성을 구별해 내지 못하게 되므로, 변호사 선택을 위한 조언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상업적 브로커나 기관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으로부터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 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3) 경영전략적 측면

변호사의 경영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전문변호사로서 평판이 고정되어 감에 따라 의뢰건수도 고정화 내지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전문성 기량에 대한 명성이 퍼져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성은 전문화된 의뢰인을 거꾸로 창출해 내어 고정화하고 이처럼 고정화된 의뢰인에 의해 변호사의 수입은 고정화하게 된다. 의뢰사건의 고정화는 유형화를 가능하게 하여 개개 사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케팅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독일에서 전문변호사에 대한 표시는 중요한 마케팅수단이 되고 있다. 전문변호사의 칭호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 차별화시킨다. 독일에서 전문변호사는 특수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그들이 계속교육을 통해 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선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과 자격유지를 위한 계속교육을 통해 일정한 질을 유지한다는 일반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어 전문표시를 취득하지 않은 다른 변호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한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표시를 가치 있는 마케팅 도구로 평가하여 더 나은 시장접근과 더 높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대부분의 젊은 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 표시를 취득하고자 한다. 이러한 독일의 실정은 우리나라에서 전문변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하나의 긍정적인 사례가 된다고 하겠다.

다. 효 과¹⁸

첫째, 일반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권리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일반 시민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원하는데, 위 제도는 법률소비자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게 된다. 또한 전문등록 변호사의 특별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은 재판상·재판 외에서 시민의 권리보호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전문성을 선전하는 경우에 광고의 규제를 통하여 오히려 허위표시로부터 법률소비자들을 보호해 준다.

둘째, 변호사의 자격을 보증하고 직업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해 준다. 전문등록의 기준은 변호사의 질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 해도 전문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보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전문변호사의 서비스 급부의 자격보증에 기여한다. 그리고 계속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셋째, 변호사의 인적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전문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를 보면, 변호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문화가 이미 확립되어 있거나 모든 변호사들이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분야임에도 보수가 적은 분야는 전문분야로 채택하여 전문변호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변호사의 전문화가 주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들 분야의 전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변호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인적 배분의 효과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 변호사들에게 경원시되었던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국민의 권리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2. 해외 사례

현재 전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이 있으며, 호주 및 일본 등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 전문변호사의 자격은 2개까지 중복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경우에 그의 업무범위가 인정된 전문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문변호사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사무소의 간판이나 광고에 전문변호사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¹⁸ 앞의 책, 5~7면.

미국의 경우에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문변호사도 모든 사건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인증요건이나 인증으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은 개개 변호사에게 속하게 되며 소속 법률회사까지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변호사의 인증을 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임의이며, 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 쟁의 변호사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증된 전문변호사임을 광고할 권리가 있다. 한편, 전문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로부터 의뢰인을 소개받은 경우에 그 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가. 국가별 전문 인정기준

[각국의 인정 기준]

기준항목	미국 (California)	캐나다 (Ontario)	영국			독일	
			인신피해	가족	파산		
실무경험연수	규정없음	7년	3년	3년	3년	3년	
전문	전문경험연수	-	5년	-	-	-	3년
분야 경험	업무시간	25%/3년	개별분야 기준	-	550시간/3년	600시간/3년	-
	취급건수	-	개별분야 기준	60(36)건/5(3)년	-	-	개별분야 기준
	특정업무요건	개별분야 기준	개별분야 기준	있음	없음	없음	-
계속교육	45시간/3년	90시간/5년	수강실적 제출	18시간/4년	수강실적 제출	매년 10시간	
동료평가	9인	4인	임의제출	2인	없음	없음	
필기시험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면접	필요에 따름	필요에 따름	필요에 따름	필요에 따름	없음	필요에 따름	
조사서	없음	없음	필수	필수	필수	없음	

우선 독일과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되는 요건은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한 기간의 실무경험이다. 다만 실무경험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을 소요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와 일정 기간 동안의 전문분야 취급사건 수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미국과 캐나다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 후자는 독일의 입장이다. 필요에 따라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세 나라가 동일하다. 그 밖의 공통기준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나다는 많은 부분에서 미국제도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이 전문분야의 경험을 측정하는 기준항목의 대부분을 개별분야에 맡기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동료심사나 필기시험의 유무도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인정기준의 특징은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이 매우 체계적이며 세밀하게 정해져 있고, 실무경험뿐만 아니라 이론 지식의 전문화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영국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극히 비체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개개 전문패널마다 인정기준이 전혀 다르다. 다만 공통하고 있는 것은 조사서에 의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방식은 크게 독일식, 미국식과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나. 전문변호사의 자격 유지기준

1) 독 일

전문변호사 표시를 수여받은 자는 해마다 그의 전문분야에 대해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계속교육의 총 기간은 10시간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전문변호사법 제10조). 계속교육을 해태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동법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연방변호사법 제43조 c 4항에 따라 동법이 규정한 계속교육을 해태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 표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미국 및 캐나다

미국에 있어서 미국변호사협회 모범안은 전문가 인증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재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재신청의 경우에 재신청자는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과 지속적인 법률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도 계속교육을 자격유지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신청 전 5년간 매년 최저 18시간의 당해 전문분야의 연수가 요구되고 그 중 적어도 6시간은 인정기관의 인가를 받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3) 영 국

영국의 변호사는 배리스터와 솔리시터가 존재하며, 전자는 법정변론만을 전담하며 후자는 일반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등 법정변론 이외의 법률업무를 담당한다. 전문인증제도는 솔리시터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바, 솔리시터의 전국조직인 법조협회(The Law Society)가 운영하는 전문인위원회(Specialist Panels; 이하 '패널' 이라 함)가 그것이다. 즉 법조협회는 솔리시터 개인의 특정 법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패널과 승인방안(Panel & Accreditation Scheme)을 마련하여 특정 법분야에 대한 패널을 설치하고 정해진 요건을 만족시키면 그 패널의 멤버가 되는데 이러한 멤버는 당해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인증된 것이 된다.

패널의 회원자격기간은 패널별로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에 5년이고 3년을 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패널들은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계속교육은 영국의 변호사들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며 법조협회는 모든 솔리시터들에게 연간 최소 1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패널의 회원들은 통상 패널에서 실시하는 연간 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연수를 받음으로써 계속교육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3.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가. 개 요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제화·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전문성을 극대화 하며,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동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법조경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전문변호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변호사를 고려하여 인증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다.

전문분야 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최대 2개 분야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 여부는 변호사단체가 실시한 교육수료경력과 학위취득 유무, 관련 사건취급 정도, 대학강의실적, 관련 기업체나 정부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동 제도를 통하여 그동안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참고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변호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법률 수요자들에게는 적절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지인을 통한 사건 수임에 의존해 왔던 변호사들에게는 업무광고 시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분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므로 사건수임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회원 상호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인들이 보다 손쉽게 필요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분야별로 변호사를 검색해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 관련 규정

1)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분야의 구분] ①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36개 분야로 구분한다.

가사법, 건설법, 공정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중재법, 금융법, 기업인수합병, 노동법, 도산법, 등기사무, 무역법, 민사법, 방송통신법, 보험법, 부동산관련법, 상사법, 상표법, 손해배상법, 스포츠법, 에너지법, 엔터테인먼트법, 의료법, 임대차관련법, 저작권법, 조선관련법, 조세법, 중재법, 증권법, 특허법, 해상법, 행정법, 헌법재판, 형사법, 환경법, 회사법, IT법 등

②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3조[신청 등] ①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와 전문분야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함)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이 추천한 3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③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 등록신청을 받는 즉시 해당 전문분야 담당 심사위원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고, 이에 따른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상임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료 경력
2.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학위 취득 유무
3. 해당 전문분야에 관하여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강의실적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경력
5. 기타 법조계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명성 유무
6. 해당 전문분야사건 취급 경력, 관련 판례 평석 및 연구논문 작성 실적

제6조[등록증의 교부 등] 협회장은 전문분야를 등록(갱신)한 변호사에게 전문분야등록증을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대한변협신문에 전문분야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분야 등록의 유지] ① 전문분야 등록(갱신 포함)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등록유효기간 중에 동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를 1회(10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동 기간 중 취급한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원고지 50매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① 전문분야 등록(갱신) 후에 전문분야 등록의 기준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전문분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협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 등록(갱신)을 취소할 경우, 협회장은 대한변협신문에 등록취소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갱신] ①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제7조에서 정한 등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변호사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한 신청서와 소정의 등록 갱신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 등록갱신을 위한 신청을 등록유효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만일 등록 부적격 판단을 할 경우에는 2주간의 보정기간을 주어 재심사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① 전문분야 등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9

조 제3항에 의거 등록갱신 부적격판단에 대한 보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갱신부적격 결의를 한 경우, 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갱신신청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할 경우,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등록 말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등록을 말소한 경우, 협회장은 대한변협신문에 전문분야등록말소를 공시한다.

제11조[재심사청구] ① 변호사는 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 등록심사결과와 등록(갱신)취소 결정, 갱신 부적합결정, 등록(갱신)말소 결정에 대하여 관련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심사결정 1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신청비]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 신청에 따른 신청비는 전문분야별로 각 100,000원으로 하며, 등록 또는 갱신 거절 시 5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13조[준용] 전문분야 등록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임대차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형사법, 상사법, 회사법, 해상법, 보험법, 행정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증권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기업인수합병, 에너지법,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방송통신법, 환경법, IT법, 의료법, 도산법, 국제중재법, 무역법, 조선관련법, 건설법, 중재법, 등기사무 등

③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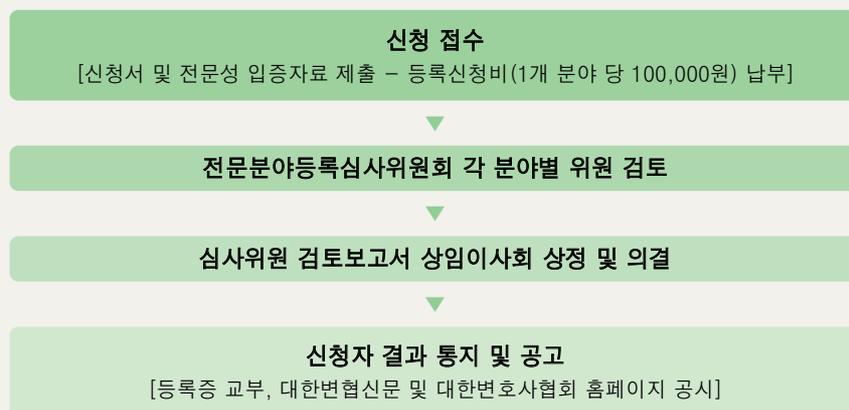
다. 등록분야

가사법, 건설법, 공정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중재법, 금융법, 기업인수합병, 노동법, 도산법, 등기사무, 무역법, 민사법, 방송통신법, 보험법, 부동산관련법, 상사법, 상표법, 손해배상법, 스포츠법, 에너지법, 엔터테인먼트법, 의료법, 임대차관련법, 저작권법, 조선 관련법, 조세법, 중재법, 증권법, 특허법, 해상법, 행정법, 헌법재판, 형사법, 환경법, 회사법, IT법 등 36개 분야

라. 등록절차 및 유효기간

한 번 등록한 분야의 전문인정은 5년간 유효하다.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등록유효기간 중에 동 분야의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를 1회(10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동 기간 중 취급한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원고지 50매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갱신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다.



4. 등록 현황(2010년 8월 말 기준)

가.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신청건수	처리결과			
	등록	등록 불가	등록 취소	미결
662 (425명 신청)	624 (410명 등록)	14	1	23

나. 분야별 등록현황(총 624건, 410명 등록)

순번	전문분야	건 수	순번	전문분야	건 수
1	가사법	51	19	스포츠법	5
2	건설법	67	20	에너지법	5
3	공정거래법	12	21	엔터테인먼트법	4
4	국제거래법	9	22	의료법	26
5	국제중재법	7	23	임대차관련법	3
6	금융법	25	24	저작권법	18
7	기업인수합병	19	25	조선관련법	2
8	노동법	10	26	조세법	43
9	도산법	25	27	중재법	5
10	등기사무	1	28	증권법	11
11	민사법	19	29	특허법	24
12	무역법	1	30	해상법	10
13	방송통신법	5	31	행정법	32
14	보험법	11	32	헌법재판	4
15	부동산관련법	81	33	형사법	28
16	상사법	12	34	환경법	9
17	상표법	6	35	회사법	14
18	손해배상법	16	36	IT법	4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시행에 따른 변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8월 말 현재 개업변호사 중 약 4%의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등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포함하여 2천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배출되게 되면, 전문분야를 표방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각각 중점 교육분야를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고(제14장 법조인 양성제도, 138페이지 참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전공과 경력 등이 다양해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특화되어 진출할 수도 있어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이러한 신규 변호사에게 개업 초기의 사건 수임과 업무분야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한해에만 입학생 중 변리사 26명, 회계사 21명, 세무사 7명, 법무사 2명 등 총 71명이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과 별도의 전문분야 등록명부의 배부가 이루어지면, 이를 통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건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홍보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개선 과제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목적은 무엇보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등록된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등록규정상에는 등록기간 중 일정한 연수를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 사건수임에 대한 보고서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제도, 각종 법령이 수시로 변화하고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전문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의 상황이므로 구체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약 2,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전문분야 등록 수요에 맞추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규정에 정해진 36개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로 변호사들이 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와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분야는 어떠한 것들인지 실증적 검토를 하여 전문분야를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직 시행기간이 일천하지만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변호사 개개인의 업무영역과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법률서비스라는 전문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내외에서 선진화, 전문화에서 앞서감을 인정받고,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보다 합리적이고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